



---

# 2018년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확대 추진계획

---

2018. 7.

**복지본부**

자활지원과

## 사전 검토항목

☞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‘■’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 (※ 비고 :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)

구 분	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	검토 완료	해당 없음	비 고
시 민 참 여	●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청책토론회, 설문조사, 시민공모 등	■	<input type="checkbox"/>	
전 문 가 자 문	●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? 예) 자문위원회 개최, 타당성 검토, T/F 운영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갈 등	●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,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사 회 적 배 려	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여성, 아동, 장애인, 한부모 가정 등	■	<input type="checkbox"/>	취약계층 주거지원
일 자 리	●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직·간접 채용, 취업알선, 전문인력양성, 창업지원 등	■	<input type="checkbox"/>	
선 거 법	●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? 예) 홍보물 배포, 표창수여, 경품지급, 기부행위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안 전	●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장소·시설물 점검,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타 기 관	● 타 기관 협의·협력(타 자원 활용 등)을 하였습니까? 예) 중앙부처, 타 지자체, 투자·출연기관, 민간단체 등	■	<input type="checkbox"/>	노숙인시설 등
홍 보	●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보도자료, 기자 설명회, 현장 설명회 등	■	<input type="checkbox"/>	사업종료시 보도자료 제공
정 책 영 문 화	●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영문 제목·요약, 해외 언론 보도, 외국어 홈페이지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바 른 우 리 말	●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? 예) 별첨, 첨부 ⇒ 붙임, 가이드라인 ⇒ 지침 등	■	<input type="checkbox"/>	
결 재 문 서 공 개	● 공개 여부를 “비공개”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~제8호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
# 2018년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확대 추진계획

거리노숙인 신규 유입을 차단하고, 조기 자립지원을 위해 임시주거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함

## 1

### 지원현황 및 실태

#### 사업개요

- 추진근거 :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
- 지원대상 : 거리노숙인 및 노숙위기계층
- 지원내용 : 고시원 및 쪽방 단기 월세지원, 입주 후 사례관리
- 지원방법 : 수행기관과 업무협약에 따른 보조금 지원

#### 추진경위

- '10. 10월, G20정상회의 관련 노숙인 감소대책으로 서울시 임시주거지원사업 추진
- '11. 8월, 흑한기 및 흑서기 임시주거지원사업 한시적 시행
- '12. 4월, 임시주거지원사업 연중 상시사업으로 변경
- '17. 4월, 지역사회 잠재노숙인까지 사업 확대시행(예산 5억 추정)

#### '18년 지원현황(기준)

- 지원목표 : 600명(당초 기준) ※ '17년 1,045명 지원
- 지원실적 : 390명 주거제공(6월말 현재), 199명 자립지원(일자리 94, 수급신청 105)
- 사례관리 : 생활용품지원 281건, 주민등록복원 58건, 장애인등록 2건 등  
※ 중복지원자 포함된 인원임
- 지원예산 : 510백만원 ※ 추경포함 '17년 1,036백만원
- 수행기관 : 6개소(종합지원센터 2, 일시보호시설 3, 단체 1)

### 3

## 확대 운영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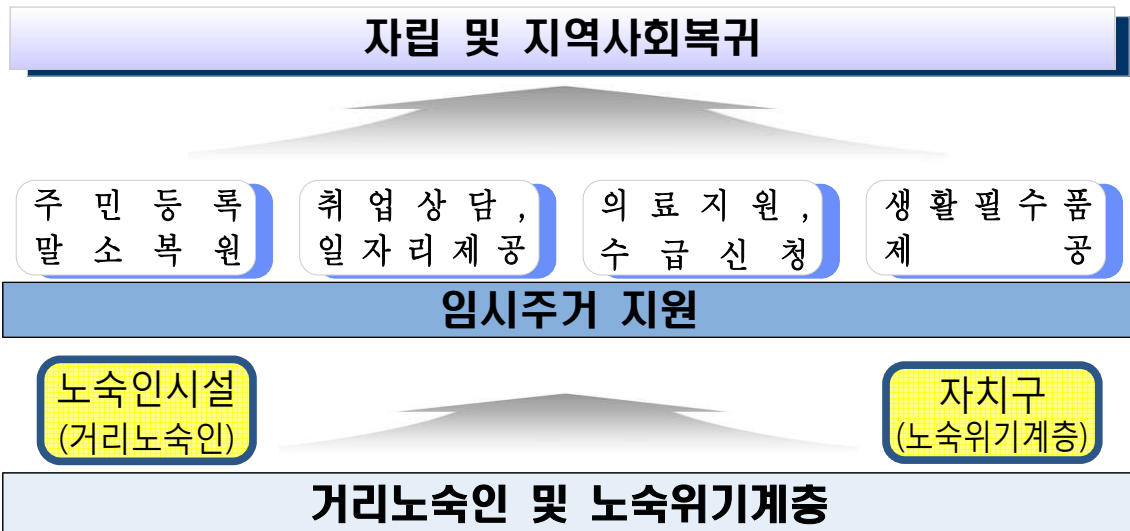
#### 확대운영 필요성

- 중증질환자, 고령자 등 보호가 시급한 거리노숙인 상존
- 지역사회 내 장기간 실직, 건강악화로 노숙 위기계층 증가
- 지원대상자 증가로 예산 조기집행, 동절기 대비 예산 추가확보

#### 추진방향

- 거리노숙인 등 지원대상자 적극발굴, 적기 지원하여 효과성 제고
- 겨울철 건강취약자·고령자 확대 지원, 저체온증 사고 예방
- 주거제공 후 찾아가는동주민센터 등에 연계, 노숙 조기종결 유도

#### 지원체계



#### 지원목표 : 900명 (예산 : 765백만원, 255백만원 추경포함)

※ 당초 지원목표 : 600명(예산 : 510백만원)

#### 임시주거 우선 지원대상

- 사고위험이 높은 중증질환 등 취약 거리노숙인, 여성노숙인
- 초기 노숙인, 찜질방, 쪽방 등에 거주하는 잠재 노숙인
- 무소득, 장기 월세체납으로 퇴거위기에 있는 노숙위기계층

## □ 운영기관

### ○ 운영기관 : 종합지원센터 등 7개소(기존 6개소)

- 추가시설 : 강동희망의집(노숙인 자활시설)

- 추가사유 : 심야 및 동절기 동남권 거리노숙인 응급보호

※ 강동희망의집은 동남권 유일한 노숙인시설로 경찰·자치구로부터 타시설 입소가 어려운 심야시간 위기노숙인이 의뢰되는 경우가 많으나 시설내 보호 불가

### ○ 시설별 지원목표

단체별	계	다시서기	브릿지	옹달샘	햇 살	거리의 천사들	디딤센터	강동 희망의집
거리노숙인 상담구역		서울역주변	시청·종로·을지로	영등포, 구로, 금천	영등포, 강서, 양천	서초·강남·송파·강동	여성노숙인	동남권 응급보호
자치구 연계	25개구	용산구 등 6개구	서대문구 등 8개구	영등포구 등 4개구	금천구 등 3개구	서초구 등 4개구	-	-
기존 지원목표	600명	360명	100명	40명	40명	50명	10명	-
지원현황 (6월현재)	390명	253명	66명	17명	17명	30명	7명	-
확대목표	900명	540명	150명	60명	60명	70명	15명	5명
사례 관리자	8명	3명	2명	1명	1명	1명	자체인력 활용	자체인력 활용

※ 지역별 거리노숙인 규모에 따라 주거지원 인원 배정, 동절기 응급쪽방 포함

## □ 지원내용

### ○ 주거지원 : 월 25만원 기준으로 최장 6개월간 임시주거 지원

- 지원방법 : 시설에서 고시원·쪽방 등 계약, 노숙인 입주

- 지원범위 : 지역 여건에 따라 20% 범위 내 가감 사용(20~30만원)

※ 25만원 초과시 상담기록 포함 사유서 첨부, **여성노숙인은 30%** 범위 내 가능

### ○ 생활용품 : 1인당 10만원 이내 ※ 의류 등 운영기관 후원물품 최대한 활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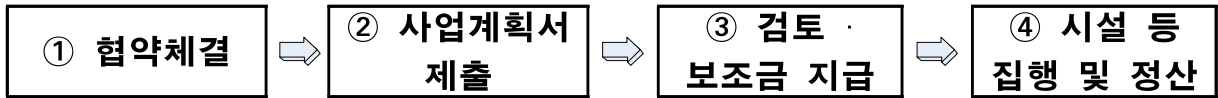
### ○ 사례관리 : 사례관리자 8명 배치, 입주일부터 1년간 사례관리

- 행정지원 : 주민등록복원, 기초생활보장 수급신청, 장애인 등록 등

- 취업지원 : 구직등록, 면접 및 급여 수령 이전 출근교통비 지원

- 프로그램 : 정기적인 생활상담 및 사회복귀 지원프로그램 운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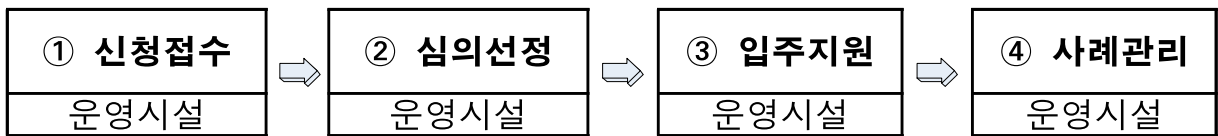
## □ 市 보조금 지원



- ① 협약 체결 : 市-운영기관 간 협약체결(강동희망의집 신규 협약체결)
- ② 사업계획서 제출 : 운영기관별 사업계획서 市(자활지원과) 제출
- ③ 검토·보조금 지급 : 운영기관 사업계획서 제출, 검토 후 보조금 지급
- ④ 집행 및 정산 : 매월 운영실적 市 제출, 보조금은 사업기간 종료 후 정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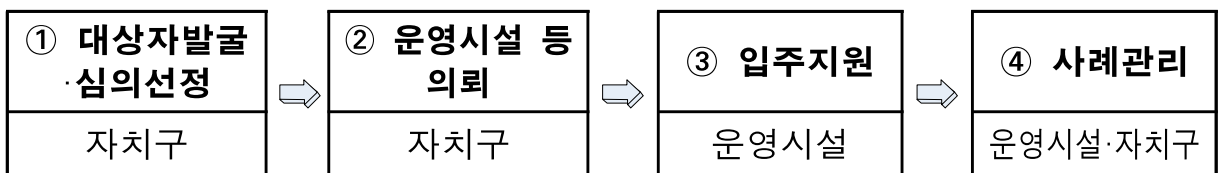
## □ 지원절차

### 1] 노숙인시설 등 발굴 지원



- ① 신청접수 : 거리상담 및 내방을 통한 신청접수
- ② 심의선정 : 상담결과에 따른 점수표를 작성, 심층상담 후 선정
- ③ 입주지원 : 대상자 희망지역 월세계약 후 입주지원(월세는 시설에서 납부)
- ④ 사례관리 : 노숙인 입주 후 방문 사례관리, 자립지원

### 2] 자치구 발굴 지원



- ① 대상자발굴 : 지역사회 노숙위기계층 발굴, 상담결과에 따른 점수표 작성·심층상담 후 선정
  - 긴급지원 등 타복지제도 우선지원, 연계 불가능할 경우 노숙인 임시주거지원 의뢰
- ② 운영시설 의뢰 : 상담결과 점수표 포함하여 권역별 운영시설 지원의뢰
- ③ 입주지원 : 대상자 희망지역 월세계약 후 입주지원(월세는 시설에서 납부)
- ④ 사례관리 : 자치구에서 사례관리, 필요시 운영시설 지원

〈자치구별 연계 운영시설〉

자치구	운영 시설	연락처
용산구, 중구, 노원구, 도봉구, 중랑구, 광진구 등 6개구	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(용산구 한강대로 92길 6)	777-5217
종로구, 서대문구, 마포구, 은평구, 강북구, 성북구, 성동구, 동대문구 등 8개구	브릿지종합지원센터 (서대문구 서소문로 57-1)	363-9199
구로구, 강서구, 관악구, 영등포구 등 4개구	옹달샘드롭인센터 (영등포구 경인로 94길 6)	2068-9113
금천구, 양천구, 동작구 등 3개구	햇살보금자리 (영등포구 국회대로54길41-16)	2636-8182
서초구, 강남구, 송파구, 강동구 등 4개구	거리의천사들 (종로구 이화장길 36)	744-8291

※ 여성일시보호시설 디딤센터, 자활시설 강동희망의집은 노숙인 자체발굴 지원 (업무 전담자 미배치)

**지원시 고려사항**

○ **체납월세 및 생활필수품 지원**

- 고의체납 등 도덕적 해이 문제로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으로 체납금 납부는 불가, 체납금에 대해서는 법률구제서비스 지원 연계(보증금 지원불가)
- 자치구 노숙위기계층 연계시 생필품은 가급적 자치구 자원 우선 활용, 불가피할 경우 노숙인시설 최소 범위내 지원

○ **가족단위 노숙위기계층 지원규모**

- 1인 월 250천원, 2인 350천원, 3인 500천원 내 고시원·연립 다인실 지원

**소요예산 : 765,000천원** (기존예산 510백만원, 추경 255백만원)

○ **사업비 : 574,353천원**

- 월세 : 250천원 × 2개월 × 900명 = 450,000천원
- 생활용품·사례관리 : 100천원 × 900명 × 75% = 67,500천원
- 동절기 특별사례관리 지원 : 56,853천원

○ **사례관리자 인건비 : 181,047천원**

- 인건비 : 1,600천원 × 8명 × 12월 = 153,600천원
-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: 153,600천원 × 9.53543% = 14,647천원
- 퇴직적립금 : 153,600천원 ÷ 12 = 12,800천원

○ **출장여비 : 9,600천원** (10천원×10회×8명×12월)

## 4

## 향 후 계 획

- 예산추경 시의회 안건상정 : 9월중
- 확대계획 운영시설 통보 : 9월말
- 운영시설 간담회 실시 : 9월말
- 운영시설 보조금 지원 : 분기별

- 붙임 1. '18년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운영 업무협약서 1부  
2. '18년 임시주거지원사업 확대 운영지침 1부(서식1~11호). 끝.